

민생물가 특별관리
관계장관 TF (공개)

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

2026. 2. 11.

공정거래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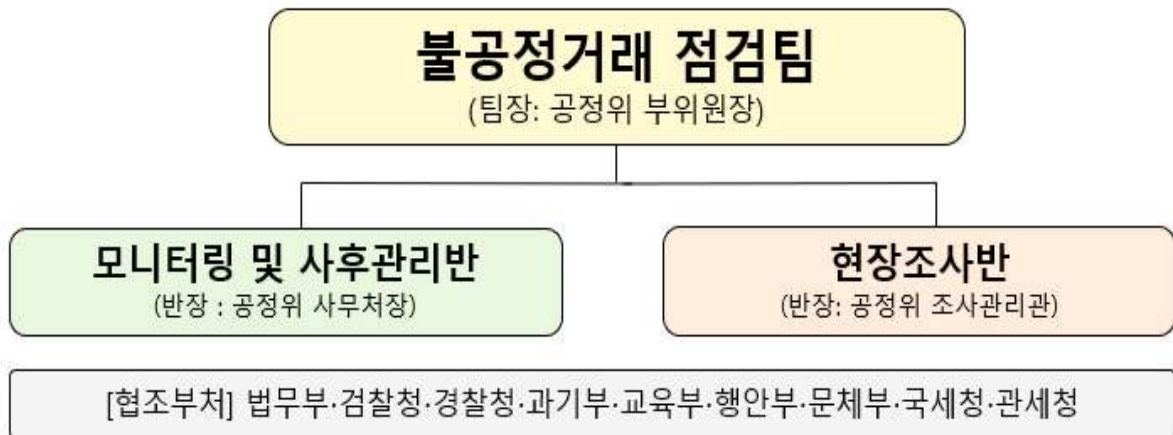
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

□ (개요)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高 물가로 인한 민생고가 여전하여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운영

→ 산하에 불공정거래 전담팀을 운영하여 물가 감시 역량 등 총동원

□ (전담팀 구성) 공정위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하고, ㉠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반, ㉡현장조사반 구성 → 범부처 불공정 품목 점검체계 강화

< 전담팀 구성방안(잠정) >



□ (전담팀 운영방안) ㉠불공정 품목 분석 및 가격 모니터링 강화 + ㉡관계 부처 합동 현장조사 실시 + ㉢현장조사 이후 지속적 사후관리

① (분석 및 모니터링) 독점 고착화 등으로 인한 불공정 품목 분석 및 민생물가 부담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강화

- ▲이미 가격이 높게 형성된 품목, ▲가격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은 품목 등과 같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우려되는 품목을 신속 선별·분석하여 중점 관리

② (현장 조사) 불공정 우려 품목은 공정위와 소관부처 합동 현장조사 실시

- 현장조사 결과 담합,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최우선 신속 처리 및 가격 원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(가격재결정명령 등) 부과
- 중대한 범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공정위와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

③ (사후 관리) 설탕, 밀가루 등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고질적 분야에 대해서는 제재에 그치지 않고,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재발 방지

- 공정위는 현장조사 실시 품목·제품에 대해 TF 종료시까지 매주 가격 추이를 보고*받는 등 사후관리 강화

* [공정거래법 제87조①]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

□ (추진일정)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운영기간에 맞추어 추진

- TF 회의 이후 불공정 거래 점검팀 킥오프 회의(2월 2주 잠정)
→ 격주 회의 실시
- 불공정 품목 신속 선별·분석(2월 2주) → 1차 선별 후 지속 업데이트
- 민생물가 부담 주요 품목 가격 모니터링(2월 2주~) → 매주 실시
-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 실시(상시)